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71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서영교·박희승·임오경

허 영・박홍배・윤준병

박균택 • 위성곤 • 강유정

송재봉 • 이수진 • 진선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혼한 자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했던 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12. 29. 2015헌바 182)에 따라 수급권 인정 기준을 개정한 결과임.

그런데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그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12월 29

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사이에 지급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2018년 6월 20일 이 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달리 신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취급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24. 5. 30. 2019헌가29).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써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24년 5월 30일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개정법률 부칙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관한 적용례) <u>①</u>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
	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
	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
	<u>24년 5월 30일이후 발생하는</u>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
	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